

사설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들이 지난 22~23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우리 지역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해 무소속 3명까지 모두 5명의 후보자들이 나와 자신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은 그동안 보여온 '이합집산'을 어김없이 되풀이 했다. 또 당명도 모두 바꿨다. 매년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고 있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은 결코 굽지 않다.

정당은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수백년간 양당 구도를 유지해온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화된

정치에 비해 원칙과 쫓대를 상실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참으로 같고 같이 멀다고 하니 할 수 없다.

정당 고유의 보수색이나 진보색을 유지하면서 당명을 바꾸는 경우는 그나마 국민들의 '미움'을 '사랑'으로 돌리려는 자구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의식수를 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 정감이나 정책과는 거리가 먼 후보자를 영입하거나, 자신이 평생 몸담아왔던 정당을 떠나 신념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정치에 대한 큰 불신감을 넘어 환멸까지 안겨주고 있다.

말 그대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이 되거나 반대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이런 현상들은 모두 '권력 욕'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사뭇 다르다.

보다 존경받는 이유는 '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날아가는 대풍의 양날개와 같은 것으로, 한쪽이 옳고 한쪽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뿐이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후보자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 출마하고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성향의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 행위라고 하겠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신념과 성향에 어긋나는 정치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들이 줄어들고, 때론 손해를 보면서도 깨끗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한 길을 가는 '의로운' 정치인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의로운 정치인을 기다리며

중국 고전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관우·장비 3형제는 중국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력을 잡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이 훗날 중국을 잠시 통일하는 등 권력을 쟁취한 조조(조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훗날 책사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이 서진 황제에 오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公明正大(고명정대)한 일꾼은 오직 국민과 주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인물이다. 우리의 대변인을 찾겠다는 것, 누구이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

어떠한 인물을 결정하여 뽑을 것인가? 학력, 경력, 성실성, 도덕성, 의, 덕, 효, 덕망 있는 분은 우리의 일꾼이 되겠지요? 투표 용지를 통하여 내가 찍으니 내 마음 나만 결정하지요. 오직 자기의사 결정만으로 뽑을 것인가? 물론 나의 희망은 정직, 검소, 겸양을 갖춘 분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무슨 일-국가사회 봉사자와 義愛新(의애신) 겸한 분을 뽑아야죠. 어떠한 명사를 선택할 것인가? 명예 뚜렷한 공덕 전문인 총 화염 등이 중요하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 일부를 부여

이러한 사람을 다수인의 의사로서 헌법이나 법률로 지정된 공무를 담당할 자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나와 너 즉 우리가 나의 한정된 권리와 너의 권리를 통하여 당선인에게 한정된 권리의 일부를 부여해 주는 권한행사이다. 국민에게 큰 影響(영향)을 미칠 분이다.

국가엔 국민주권자인 국민이, 지방엔 주민자치권자인 주민이 이들 공무원(공복)에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논설위원



공명정대한 인물은 누구인가

헌법 법령에 의한 한정된 권력 권리 권한의 일부를 권한과 국민의 명예를 부여 해주는 권한행사이다.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보통선거(일정한 연령 부여), 평등선거(1인 1표), 직접선거(일반인이 입후보자에게 바로 선거), 비밀선거(무기명 투표), 자유선거(자기 자유로운 의사결정) 등의 선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복을 당선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주민의 신분으로서 국가의 주권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 방법에는 국민투표(결단)에 따라 국민발안(창안 제안) 국민소환(해직 파면) 함으로써 경계할 부정

선거는 국민 주민의 선거감시감독 할 몫임과 동시에 권한행사이다. 다스림은, 정당-당원책임, 책임-공무책임, 의회-의원책임, 대의-대의원책임, 대표-대표책임, 대표민주-국민책임, 여론-여론책임 등 신성하고 공정히 풀어야하고, 공명정대한 선량인을 국민과 주민의 공복을 내 세워 아한다는 것. 대통령 국회의원선거법위반자에 대한 형을 처하게 된다.

선거범죄 없는 깨끗한 선거 기대

선거범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공천헌금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주는 행위, 금품 響應(향응)제공 등 돈 선거, 비방 흑

색선거 중상 諷刺(모략), 공무원의 不法選舉關與(공무원의 불법선거관련), 사조직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에 위반하여 선거 사범이 된다.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어떠한 분들인가? 첫째로 위반요건해당 될 때 밥 한 그릇 못 먹고 먹고 10~50배 물어아한다.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받는 경우,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후보자와 그 배후자등으로부터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후보자와 그 배후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금 부의금 제공받은 경우가 있다.

둘째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받는 분 들은 누구인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금액 해당 자이다.

형벌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 첫째 벌금과 형벌요건해당 될 때에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가액 100만 원 등 초과할 경우다. 둘째 3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벌금 처한다.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경감 또는 면제 가능하다. 신고제보자는 신분보장 하고, Tel-1390으로! 받으면 과태료 3천만원 부과되고, 신고제보하면 5억원 포상금을 받는다.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란 기고·독자투고 원고 받습니다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고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임직원 : 발행인 윤승근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원광연 총무과장 김창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도연
칼럼위원 : 김광섭 김정균 김종식 김지연 남숙희 남영선 박형수 이선국 한성수 황연옥
시민기자 : 강성희 김일용 김태극 박선애 백옥식 장공순 최돈불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